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6. 4 선고 2020가단35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정진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25 지분에 관하여 2019. 5.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중 2/2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8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2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7. 10. 25. 25,000,000원, 2019. 2. 7. 5,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425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9. 3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1,381,843원 및 그 중 24,948,899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0.9%,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의 부친 D는 2007. 5.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인 피고, C, F, G, H, I, J, K, L, M, N, O, B, P, Q 등(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 C는 각 2/25지분씩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 C 등은 2019. 5.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5. 2.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이 C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시기,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저축한 돈으로 매수하고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중 2/2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2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별 지 목 록

1. 충청남도 보령시 대 298 m'

2. 충청남도 보령시 천 288 m'

3. 충청남도 보령시 ,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시원트백들조

경사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7.44 m'